

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,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제정·시행(2009.04.24.)함. 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손괴자를 적발하고 손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조례 적용이 어려움. 현재 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신고포상금 예산 2,000천원 삭감 조치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| | 회 계 과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과 장 | 임 응 건 |
| | 팀 장 | 박 규 태 |
| | 담 당 자 | 이 형 대 (480-5089) |